



주요국 증액연금시장의 성장 및 장애요인

김동겸 선임연구원

- 전통적 연금상품은 계약자의 연령과 성별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급여액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가입유인이 낮은 문제가 존재함. 이를 극복하고자 1990년 중반 영국을 중심으로 증액연금상품이 개발되었으나, 국가별로 시장 활성화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영국은 연금화 의무 정책, 언더라이팅 기법 발전 등을 통해 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미국, 독일 등에서는 언더라이팅의 한계, 보험회사 간 경쟁 미흡, 적립금 규제 등이 시장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사람의 연금가입유인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증액연금(Enhanced Annuities)은 국가별로 시장 활성화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증액연금이란 계약종료 시점에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외에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산정요인(pricing factor)을 활용하여, 평균가입자(표준체)보다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하체(substandard)에 대해 연금급여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상품임.¹⁾
 - 연금수급액을 결정하는 가격산정요인으로는 피보험자의 흡연정도, 비만지수, 거주지역, 혼인상태, 기타 중증질환(심장질환, 고혈압, 호흡계질환, 암 등) 보유여부 등이 있음.
- 국가별 증액연금 시장규모를 보면, 영국은 증액연금시장이 활성화된 반면, 미국, 독일 등은 시장규모가 작은 편임.
 - 전 세계에서 증액연금 시장규모가 가장 큰 영국은 1995년 증액연금상품 도입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연금상품의 28% 가량이 증액연금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
 - 반면, 독일은 2014년 4월 기준 증액연금상품 판매건수가 800건에 불과함.²⁾

1) 증액연금에는 흡연자연금(Smoker Annuities), 거주지역연금(Socio-Geographic Annuities), 건강지표연금(Health Indicator Annuities), 중대질병연금(Impaired Annuities) 등이 있음. 흡연자연금은 최근 10년간 매일 1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연금상품보다 급여액을 10% 정도 높은 연금상품임. 중대질병연금의 평균수명을 5년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중증질환 보유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입 전에 건강진단을 요구함(Hannover Re 1998).

2) 독일에서 증액연금상품을 제공하는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LV 1871, Provinzial NordWest, Basler, HanseMerkur 등 4

- 미국은 즉시연금³⁾이나 구조화 지급방식⁴⁾의 형태로 증액연금⁵⁾을 판매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영국 증액연금시장 규모 및 현황

(단위: 백만 파운드, 십억 달러,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영국	증액연금	1,095 (7.0)	1,445 (7.0)	1,786 (9.0)	2,468 (14.0)	3,019 (19.0)	4,485 (24.0)	3,847 (28.0)	2,169 (28.0)
미국	즉시연금	6.8 (2.6)	8.0 (3.0)	7.6 (3.2)	7.6 (3.4)	8.1 (3.4)	7.7 (3.5)	8.4 (3.6)	9.8 (4.1)
	구조화 지급방식	6.2 (2.4)	6.4 (2.4)	5.6 (2.3)	5.8 (2.6)	5.1 (2.1)	5.0 (2.3)	5.3 (2.3)	5.4 (2.3)

주: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연금상품 판매액 대비 비중임.

자료: Willis Towers Watson(2016); ABI(2016); LIMRA(2016).

■ Gatzert & Klotzki(2016)⁶⁾은 영국의 증액연금시장이 활성화된 요인을 연금화 의무정책, 다양한 언더라이팅 기법의 발달, 시장의 성장가능성 등으로 지적하고 있음.

- 영국은 DC형 퇴직연금자산의 연금화 의무정책⁷⁾ 시행에 따라 연금지급단계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증액연금상품이 개발되었음.
- 보험상품 가격산정 시 성별 정보에 대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반영한 언더라이팅 기법이 발달하였음.
- 시장잠재력 측면에서도 영국은 미국 대비 연금에 가입 가능한 인구의 증가속도가 더 높음.
 - 사망률개선, 저금리 장기화 등 외부환경변화 등도 시장확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개사에 불과함. LV 1871사는 1999년 계약자의 흡연행태, 신장, 몸무게, 혈압, 콜레스테롤 수준, 당뇨병, 심장병,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 기타 질병 등을 가격산정요소에 포함시킨 증액연금상품을 독일에서 최초로 출시함.

- 연금상품은 연금상품 구입시점과 연금급부액 수령시점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즉시연금(Immediate Annuities)과 거치연금(Deferred Annuities)으로 구분됨.
- 구조화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은 각종 배상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채무인수회사가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임. LIMRA(2006)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표준하체 연금시장은 2004년 즉시연금시장 전체 보험료를 기준으로 10%를, 판매건수를 기준으로 즉시연금시장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는 증액연금이 표준하체연금(Substandard Annuities)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Gatzert & Klotzki(2016), *Enhanced Annuities: Drivers of and Barriers to Supply and Demand*, Geneva Papers.
- 연금화 의무정책(Compulsory Annuitization)은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 근로기간 동안 축적한 자산을 활용하여 75세 이전에 의무적으로 연금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정책으로, 2015년 4월부터는 연금의무화 정책에 대한 개정(New Pension Flexibilities)이 이루어져 연금시장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전체연금상품 판매액 대비 증액연금상품 판매비중은 변화가 크지 않음.

〈표 2〉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증액연금시장 성장 및 장애 요인

구분	성장(활성화) 요인	장애(비활성화) 요인
수요 측면	• DC형 퇴직급여의 연금화 의무정책, 세제혜택 • 교육수준 향상, 이혼율 증가, 장기간병니즈 • 저금리 환경	• 기존 연금상품의 대체 및 경쟁 •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미흡 • 타 투자상품과의 경쟁: 주택시장, 주식시장 • 연금상품보다 현금에 대한 높은 선호
공급 측면	• 시장잠재력: 상품가입가능 인구 변화 • 사회보장제도 변화 • 보험회사 수익측면: Cherry Picking • 보험가격 산정 시 성별 정보 반영 금지	• 자기잠식효과(Cannibalization Effect) • 언더라이팅 비용 및 리스크 • 판매자에 대한 보상체계 • 감독당국의 자본금 및 준비금규제

자료: Gatzert & Klotzki(2016) 등의 내용을 기초로 저자가 작성함.

■ 미국과 독일에서는 주단위 감독체계 및 증액연금에 대한 추가준비금 적립 규제, 신규상품 출시로 인한 기존 연금상품에 대한 판매축소 우려 등이 증액연금시장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주(州) 단위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 보험회사가 새로운 언더라이팅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우며,⁸⁾ 증액연금상품에 대한 추가준비금 적립 규제 또한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⁹⁾
- 독일에서는 보험회사들이 증액연금상품 출시로 기존 연금상품에 대한 매출이 줄어드는 잠식효과를 우려하여 증액연금시장 진출에 대한 기피현상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증액연금시장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를 미리 경험한 선진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에서는 2014년 증액연금의 한 형태인 건강연계연금상품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¹⁰⁾ 경험통계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kiri**

8) 예를 들어, 미국의 Montana와 Massachusetts, 캐나다의 Nova Scotia와 New Brinswick에서는 성별 정보를 활용하여 언더라이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소득 정보의 경우 인종에 대한 대리변수라는 논란이 있어 왔으며, 혼인상태에 관한 정보의 경우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주에서 차별적인 요소로 주장이 가능함(Brown et al, 2012).

9)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NAIC) Actuarial Guideline IX-C.

10) 금융위원회(2014. 2. 20), “2014년 업무계획”.